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355
----------	-------

발의연월일 : 2026. 4. 15.

발 의 자 : 김기웅 · 백종현 · 김위상
서명옥 · 이종배 · 서범수
김석기 · 임종득 · 김승수
정연옥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문화’를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으로 정의하는 등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다양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문화의 정의가 전통적인 문화유산 중심으로 해석되어 현대적인 대중문화예술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문화거리는 지역경제의 핵심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부족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역문화의 정의에 대중문화예술을 포함하고, 문화거리 등 문화거점에 재정지원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명분을 확보하고 자발적으로 조성된 문화거점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6 신설 등).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생활문화”를 “생활문화, 대중문화예술”로 한다.

제3장에 제13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조의6(문화거점의 활성화 및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문화거리(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이 활성화되거나 문화적 특성을 보존하는 지역을 말한다) 등이 지역문화와의 관계에서 중심이 되는 지역을 지역문화 거점(이하 “문화거점”이라 한다)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거점과 관련된 민간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거점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객에게 문화거점과 연계한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등 관광체험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거점과 관련된 예술인 및 민간단체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거점의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활성화 방안의 마련 및 관광체험프로그램

램의 개발·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u>생활문화</u>,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p> <p>2. ~ 8. (생략)</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 ----- ----- ----- ----- -----<u>생활문화, 대중문화예술</u>----- -----.</p> <p>2. ~ 8. (현행과 같음)</p> <p><u>제13조의6(문화거점의 활성화 및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문화거리(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이 활성화되거나 문화적 특성을 보존하는 지역을 말한다) 등이 지역문화와의 관계에서 중심이 되는 지역을 지역문화 거점(이하 “문화거점”이라 한다)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문</u></p>

화거점과 관련된 민간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거점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객에게 문화거점과 연계한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등 관광체험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거점과 관련된 예술인 및 민간단체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거점의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활성화 방안의 마련 및 관광체험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